# Ⅲ.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

```
통상산업부고시 제
통상산업부고시 제
    : 1996.
                1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- 23호
: 1997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 1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- 4호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
    : 1998.
            5.
                2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- 43호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
    : 1999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1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- 6호
    : 1999.
                23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
            4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- 40호
                5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 99- 88호
산업자원부고시 제2002- 27호
    : 1999.
            8.
    : 2002.
            3.
                 5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- 78호
                 3
    : 2003. 12.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-126호
    : 2004. 12.
                20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127호
    : 2005. 12.
                30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- 45호
                2
    : 2007.
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- 10호
    : 2008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 29
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 12호
    : 2009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 22
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0호
    : 2009.
           10.
                12
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 3호
    : 2010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 6
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 27호
    : 2010.
            2.
                11
            4.
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-69호
    : 2011.
               27
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-78호
    : 2012.
            4.
               19
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- 28호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- 11호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 15호
    : 2013.
            5.
                20
    : 2014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20
    : 2015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 9
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 10호
    : 2016.
            1.
                21
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22호
    : 2017.
            9.
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226호
    : 2018.
           12.
                13
    : 2019.
            6.
               11
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94호
              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-149호
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126호
    : 2020.
            9.
    : 2023.
            6.
```

##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6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1.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.
- 2. 〈삭제 99.8.5〉
- 3.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 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·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,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 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.
  - 가.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.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- 4.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.
  - 가.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 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
  - 나. 연장·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할 경우 근로기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.(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.5배로 한다.) 다만,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.
  - 다.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
- 5.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.

#### 가. 변경 완성검사

- (1)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.
- (2) 저장설비의 능력증가·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·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 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.
- (3) (1) 또는 (2)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.
- 나.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 사용시설
- (1)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오피스텔 및 콘도미 니엄 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수용가구마다 액화석유가스특 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.
- (2) (1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
  - (가)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시설에 따른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시설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.
  - (나) <삭제 2023.6.20.>
  - (다) 하나의 저장설비를 다수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공동 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저장능력 산정은 당해 저장능력을 액 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수(단, 단독주택의 다가구·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건축(소유)주로 본다.)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 을 적용한다.

#### 다.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

- (1)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.
- (2)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 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수수 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.

- (3) <삭제 12.4.19>
- 6. 〈삭제 '99.8.5〉
- 7. (재검토기한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#### 부 <제2017-122호, 2017. 9. 1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#### 부 식 <제2018-226호, 2018. 12. 13.>

(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'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)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< 제2019-94호, 2019. 6. 11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#### 부 식 <제2020-149호, 2020. 9. 18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#### 부 칙 <제2023-126호, 2023, 6, 20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## [별 표]

## 1.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

| 대                   | 상                  | 금   | 액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시설구분                | 저 장 능 력            | 완 성 검 사   | 정 기 검 사   |
| 액화석유 가스의<br>충전·일반집단 | 5톤 이하              | 20만7천원  | 13만9천원  |
| 공급·저장소시설            | 5톤 초과<br>10톤 이하    | 30만8천원  | 19만1천원  |
|                     | 10톤 초과<br>20톤 이하   | 39만1천원  | 21만6천원  |
|                     | 20톤 초과<br>50톤 이하   | 50만5천원  | 29만8천원  |
|                     | 50톤 초과<br>100톤 이하  | 64만3천원  | 38만2천원  |
|                     | 100톤 초과<br>500톤 이하 | 100만2천원   | 66만1천원  |
|                     | 500톤 초과<br>1천톤 이하  | 147만5천원   | 94만8천원  |
|                     | 1천톤 초과             | 147만5천원에 1천톤을<br>초과한 500톤 마다 20<br>만8천원을 가산한 금<br>액. 다만, 288만원을<br>초과 할 수 없다. | 94만8천원에 1천톤을<br>초과한 500톤 마다<br>11만8천원을 가산한<br>금액. 다만, 179만원<br>을 초과 할 수 없다. |
| 판 매 시 설             | 판매소마다              | 17만6천원  | 12만원  |
| 가 스 용 품<br>제 조 시 설  |                    | 40만5천원  | -   |

| 대                    | 상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  | 핵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시설구분                 | 저 장 능 력                   | 완 성 검 사   | 정 기 검 사 |
| 액화석유<br>가스특정<br>사용시설 | 저장능력 100kg 이하             | 3만원   | -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저장능력 100kg 초과<br>300kg 이하 | 3만4천원   | 2만5천원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저장능력 300kg 초과<br>500kg 이하 | 5만5천원   | 3만6천원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저장능력 500kg 초과             | 5만5천원에 500kg을<br>초과한 100kg마다 2<br>천900원을 가산한<br>금액. 다만, 45만원<br>을 초과할 수 없다. |         |

다만,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·재래시장 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면제한다.